

# 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

제정일 : 2018.1.22

개정일 : 2023.8.21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씨지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간에 하나의 계좌(이하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라 한다)로 수익증권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수익증권계좌의 개설)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는 고객이 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계좌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개설이 완료된다.

## 제 3 조 (거래매체)

- ① 회사 본점을 내방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거래매체를 요청할 경우,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통한 거래에 사용되는 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무통장거래 등의 경우 회사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 등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거래매체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4 조 (비밀번호)

고객은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 개설 시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계좌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5 조 (펀드상품계좌의 추가)

- ① 고객이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에 펀드상품계좌(이하 "펀드계좌"라 한다)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약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고 해당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펀드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펀드계좌의 추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계좌 관련 규약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과 회사 홈페이지 등에 항상 구비하여야 한다.

## 제 6 조 (잔고통보)

회사는 월간 매매 등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월말 잔액·잔량 등을 다음달 20 일까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단, 회사는 매매내역 및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익증권 통장을 교부 받거나 웹 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약관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회사는 고객의 자산운용보고서통보를 직접교부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별도로 우편 발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 통보처를 자택 또는 직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 통보처는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 내의 모든 펀드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 8 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웹트레이딩시스템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6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9 조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입출금 이체 및 대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출금 이체 및 대체 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 제 10 조 (자동매매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자동매매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이체매수서비스(CMS)"란 회사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또는 고객의 가족명의의 계좌(은행출금계좌)에서 고객이 정한 특정일자(출금일)에 고객이 정한 일정금액(이체금액)을 출금하여 회사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종합계좌(입금계좌)로 입금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자동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자동매수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사전에 약정한 매수금액만큼 매수주문일자에 고객의 종합계좌에 보유한 현금으로 자동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 11 조 (자동매매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점을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서 제출
  2. 회사 홈페이지 내 웹트레이딩시스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활용
- ② 고객이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지한 후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③ 고객이 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이체금액, 출금일 또는 자동매수서비스의 매수금액, 매수주문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④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자동해지 된 이후라도 고객

이 이체종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재개시 할 수 있다.

#### 제 12 조 (자동이체매수의 처리)

- ① 은행자동출금이체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출금일로 정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일에 입금계좌로 입금처리 한다. 단,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처리한다.
- ③ 출금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처리되며, 출금일 당일 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출금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가 불가능하다.
  1. 은행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2. 지급제한 등 은행이 정하는 사유로 은행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재처리된다.
- ⑥ 출금일에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처리된다.
- ⑦ 입금처리 후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지체 없이 일괄 자동매수 처리한다.

#### 제 13 조 (자동매수 처리)

- ① 매수주문일자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매수주문일자를 정한다.
- ② 고객의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가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가 아닌 경우, 회사는 매수주문일자에 약정한 종합계좌에서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매수금액을 출금하여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인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로 입금처리 함과 동시에 매수주문 처리한다. 단, 매수주문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여 매수주문 처리한다.
- ③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의 매수가능금액이 약정한 매수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자동매수는 처리되지 않는다.

#### 제 14 조 (자동매매 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약정한 입금계좌 또는 펀드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
2.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매수 되는 펀드상품의 적립식 만기일이 지난 경우

####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웹트레이딩시스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종합계좌 내 모든 펀드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회사의 책임한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전산장애, 회선장애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선관주의 의무에 충실하게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과의 동일성 여부 및 비밀번호 확인 후 출납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또는 서명) 및 통장의 위조·변조·도용, 고객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및 기타 사고로 인한 경우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적용된다.

#### 제 17 조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 할 수 있다.

#### 제 18 조 (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제 19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본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 개월간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 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약관을 본점에 마련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0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제 21 조 (분쟁조정)

-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18.1.22)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